

요 약

- ◆ 본 연구는 건설업 부문의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2018년 4월 기준 진행 중인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국내 공사현장 1,280 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근로자가 부족한 사업체가 60%에 이르는 등 건설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있음
 - 미숙련근로자보다 숙련인력 부족이 더 심함
-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일급)은 내국인근로자 대비 87.6% 수준인 173.0천원을, 비숙련인력은 65.2% 수준인 128.8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 2018년 5월 기준 현재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총 226,391명으로 추정됨
 - 국적별로는 조선족 동포가 전체의 52.5%를, 중국 한족 26.4%, 기타 외국인 17.1%, 고용허가제 4.0%로 구성.
 - 2018~2022년 기간 동안 건설기능인력은 95천명이 초과 수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으로는 19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 건설업 현장 간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제한의 완화, 외국인력 고용인원을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이 필요,
- ◆ 건설업 동포인력 활용제도 개선방안
 - 방문취업제의 쿼터확대를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확대되는 기형적 구조를 갖는 건설업 외국인력 노동시장을 정비
 - 재외동포 비자 발급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방문취업자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 건설업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선
 - 불법취업자에 의해 잠식된 외국인력 수요를 합법인력 고용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불법취업자에 대한 채용유인을 줄이고 불법고용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시행
- ◆ 건설업 인력부족문제 적극 대처
 - 건설업 필요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산학연계, 보상체계 강화)과 숙련형성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구축방지 등의 정책기조를 강화

-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일부 직종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건설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중 불법체류자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고 내국인 노동시장 대체가능성문제가 종종 거론되고 있으나 건설업 내 외국인력 종사자 규모나 외국인력 영향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업 부문의 외국인력 실태 파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건설업 외국인력 통계에 대한 실제적 접근은 건설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 공급정책, 나아가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건설업 부문의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1.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구조

- 전체 외국인력 중 건설업 종사자는 10.7%를 차지함.
 - 비전문취업(E-9)의 3.4%, 방문취업(H-2) 동포의 26.1%가 건설업에 종사함
- 건설업 종사 외국인 중에는 방문취업(H-2) 동포가 47.0%로 거의 절반에 이르며, 다음으로 재외동포(F-4)가 18.3%로 높음. 이 둘을 합치면 65.3%에 이름
- 건설업 종사 인력의 고령화는 외국인력에서도 나타남. 4명 중 3명(74.5%)가 40대 이상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50대가 33.6%로 가장 많고, 40대도 29.7%임. 60대 이상도 11.2%에 이름
- 건설업 외국인력 고령화는 중국동포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건설업 종사 외국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동포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음. 40대 32.8%, 50대 39.2%, 60대 13.4%로, 40대 이상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

2.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특징 : 실태조사 결과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구조와 작업배치

- 2018년 현재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총 226,391명으로 전체 건설업 근로자 중 19.5% 비중 차지. 나머지 80.5%에 해당하는 비중은 내국인근로자로 추산됨.

- 전체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총공사비규모가 클수록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가 23.8%로 가장 높고, 비수도권 소재 사업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10~15% 내외를 보임.
- 숙련수준별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숙련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63.1%에 이르며, 나머지 36.9%만이 비숙련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적별로는 조선족 동포가 전체의 52.5%를, 중국 한족 26.4%, 기타 외국인 17.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인 E-9 4.0%로 구성되어 있음.
- 직종별로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 비중을 보면,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 31.3%로, 이들 2개 직종의 경우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 내외를 외국인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 작업반장을 포함하여 특별인부 등 공정별로 인부를 통솔하거나 보통인부보다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7%대로 가장 낮았음.
- 숙련수준별로는 조적공은 숙련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84.0%로 가장 높았고, 형틀목공은 80.2%로 이들 2개 직종의 숙련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80%를 상회함.

나. 건설업 인력수급 실태와 외국인력 수요

- 건설 사업체들에게 현재 내국인근로자가 부족한 상태임. 즉, 사업체 중 60% 내외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이외에 적정하다는 사업체는 40% 내외이고, 극소수의 사업체만이 과잉상태라고 응답함. 내국인근로자 부족은 비숙련인력(54.5%)보다는 숙련인력(61.3%)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 총공사비규모별로는 대다수 공정에서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중 500~1,000억 미만 규모 공정에서 가장 높은 67.0%의 응답 비중을 보임. 반대로 100~500억 미만 규모 공정에서 가장 낮은 59.1%의 응답 비중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규모간 큰 격차는 나지 않음.
- 내국인근로자 부족에 대한 지역별 편차는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충청·강원권 소재 사업체 소속 공정의 경우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공정의 비중이 68.5%로, 가장 낮은 52.1% 비중은 보인 동남권보다 16.4%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함.
-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중 34.2%의 사업체만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5.8%는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미채용 사업체 중 조사시점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지 평상시에는 채용한다고 응답한 12.8% 포인트의 비중을 합산할 경우 2개 건설 사업체 중 약 1개(47.0%) 사업체는 평상시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공사비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체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 즉, 10억 미만 사업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사업체 비중이 16.8%에 그쳤으나 50~100억 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34.4%의 비중을, 그리고 1,000억 사업체의 경우는 4.4배가 높은 73.5% 비중을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만이 조사시점 기준으로 과반수 사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권역들은 조사시점 기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채용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크게 인건비 및 공기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음.
 - 외국인근로자 공급 제한시 사업체들에게 인건비(혹은 공사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파악한 결과,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즉, 4점 척도 기준으로 질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2.92점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응답 사업체 중 2/3 이상인 68.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30.3%포인트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함. 반대로 31.9%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체 비중은 5.9% 수준에 머무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기 준수에의 평균 영향 정도를 보면, 인건비 부담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평균 영향 정도를 보면, 인건비 부담의 2.92점보다 공기 준수 여부가 2.98점으로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평균 수치는 총공사비규모별 모두 높아졌고, 또한 지역별로도 일부 권역을 제외하고는 높았음.

다. 건설업 생산성과 임금격차 분석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어느 정도의 기능수준 격차가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를 파악하는 것임.

- 해당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먼저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같은 숙련 내국인근로자 대비 82.4%의 생산성 수준이 되는 것으로 사업체들은 판단하고 있었음. 비숙련인력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79.6%의 생산성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모든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에서 숙련인력이 비숙련인력의 생산성보다 2~3%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 국적별로는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 모두 조선족 동포의 생산성 수준이 다른 외국인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외국인의 경우가 가장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였음.
-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은 내국인근로자 대비 87.6% 수준인 173.0천원을, 비숙련인력은 65.2% 수준인 128.8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숙련인력의 경우는 비숙련 내국인근로자보다도 약 23%나 높은 일당을 받고 있음.
- 국적별로는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즉,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 모두 각각 178.7천원, 132.9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국한족, 고용허가제인 E-9, 기타 외국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기능수준에 따라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간 임금 격차는 일당 기준으로 약 40천원에서 45천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숙련인력의 경우 10~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당이 132.2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반대로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1,000억원 미만 사업체의 외국인근로자의 일당이 122.4천원으로 가장 낮음.

라. 외국인근로자 임금계약 및 근로계약 방식

- 해당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임금계약 방식에 대한 조사한 결과, 건설 사업체들의 70% 이상이 내국인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인근로자와도 일당 지급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와의 임금지급 방식으로서 일당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을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근로자보다 일당 지급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하

고 있다는 비중이 더욱 높았고, 그중에서도 기타 외국인의 경우 일당 지급 방식이 가장 높았음. 반대로 고용허가제인 E-9 근로자와의 일당 지급 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업체는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체의 임금계약 방식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일당 지급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총공사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해당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내국인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1일 계약 혹은 일손이 필요할 때만 일정기간 계약을 하는 비정기적 계약을 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건설 사업체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근로자 대비 1일 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일손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 계약을 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반대로 1년 단위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사업체는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적별로 보면, 조선족 동포 및 중국 한족과는 전체 사업체 중 40%대 내외가 1일 계약형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E-9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1일 계약 사업체 비중이 낮은 대신에 오히려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업체의 비중은 다른 외국인근로자 보다 3~4배가량 높게 나타남.
- E-9의 경우 조사사업체의 34.8%가 1일 계약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일손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계약의 비중이 49.6%로서, 1년 단위 이상 계약 비중과 합할 경우 약 65% 이상이 표준계약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응답 결과가 1순위 기준임을 감안할 때 1일 계약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으로 2순위까지를 포함할 경우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대상 표준계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3. 건설업 외국인력 규모 및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

- 2018년 5월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수는 226,391명으로 추정
 - 통계청 기준의 외국인 건설업 취업자수 추정치에 단기체류자 중 건설업 종사자수 추정치를 합하면,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수는 188,373명에 달함
 -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18년 5월 외국인

취업자수를 추정하면 226,391명으로 나타남

- 건설기능분야 신규인력 수요전망과 신규인력 공급전망 결과로부터 인력수급차 전망(= 신규인력 공급 - 신규인력 수요)을 도출하면 2018~2022년 기간의 향후 5년간 건설 기능인력은 95천명이 초과수요될 것으로 전망됨
 - 연간으로는 19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능분야 외국인력 적정 규모
 - (내국인 신규수요 전망 - 내국인 신규공급 전망)
 - 다만, 현재 취업자에 외국인력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적정 규모는 '인력수급차 + 외국인력 취업자'로 산출됨
 -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19.5%가 외국인이고, 합법취업자 비율은 6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1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통계청 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합법취업자로 제한된다는 가정하에, 건설업 취업자중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3.0%를 초과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비중을 알 수 없어서 외국인력 비중에 따라 몇가지 시나리오별로 외국인력 적정규모를 도출함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력 비중을 최대 13.0%(시나리오 1)로 설정하고, 최소 절반은 조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최소 비중을 6.5%(시나리오 2)로 설정한 후, 두 시나리오의 중간값 비중 9.8%(시나리오 3)을 추가하여 3가지 시나리오별로 외국인력 적정규모를 도출함
 - 시나리오별로 외국인력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1,741명에서 최소 115,4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4.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방안

가. 실태조사에 나타난 활용실태 평가

☐ 외국인력 영향과 건설업 불법취업 문제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는 외국인력의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취업 문제 등 건설

업의 외국인력 활용 관련 현장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함

- 현장관리자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매우 낮게 나타남. 매우 잘 알고 있다는 현장관리자는 3.1%에 불과함. 들어 본 적이 있다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4.9%로 높게 나타남.
 - 10억 미만 공사현장과, 대경권 및 동남권에서는 30% 이상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장의 총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허가제 또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로 합법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수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66.9%로 나타남. 각 현장별로 외국인력의 33.1%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또는 건설업 취업허용이 안 되는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한 자로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함
 -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 건설업 취업등록제 합법취업자는 한 명도 없는 현장이 18.6%(1,021개)임.
 -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 중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 합법취업자가 전혀 없는 현장은 공사비가 10억 미만인 작은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며(33.9%), 수도권(11.8%) 보다는 비수도권 현장에서 많이 발견됨(26~32%)
-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현장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3.5%가 건설업에서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거나 또는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함
- 현장관리자 중에는 불법취업 외국인은 내국인 일자리 및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우세함. 그러나 합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세함
 -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장관리자의 17.9%만이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데 비해,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46.7%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내국인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외국인력이 합법취업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1.1%이지만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41.0%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7.0%가 비자 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함. 다음으로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확인하는 현장이 28.5%로 높음. 한편 5.6%의 현장은 합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취업등록제 평가

- 현장관리자 중 36.1%만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중 취업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현재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관리자 중 49.9%만 취업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중국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는 57.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42.4%의 현장은 현재 중국동포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취업등록제에 대해서는 몰랐음을 의미함
- 방문취업 동포 취업등록제 실시로 인한 변화 효과에 대해 대체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함
 - ‘불법취업자가 감소함’,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관리가 용이해짐’, ‘합법적 신분의 동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됨’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많이 나타남
 - ‘내국인력의 일자리가 많아짐’에 대해서는 49.7%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며, 7.5%만이 ‘그렇다’는 의견을 보임. 건설업의 방문취업 동포 취업등록제가 내국인력 일자리 창출 또는 보호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음
- 동포 취업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수가 ‘현장 출입 시 비자 또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다’(48.8%)를 선택함.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일할 때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이름표처럼 착용하게 한다’(25.7%)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애로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갈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대처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61.4%는 갈등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갈등문제를 겪은 현장 중에서는 회사 스스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20.7%로 가장 많았음

- 갈등문제가 발생한 현장만 대상으로 해결방식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인 53.5%가 ‘회사 스스로 처리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소개해 준 알선업자에게 도움을 요청(24.3%), 관련 공공기관 또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14.8%)의 순을 보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심각성 정도를 묻은 결과, 현장관리자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65.8%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함
 - 주요 애로사항 중 가장 우려가 덜한 것은 잦은 임금인상 요구와 사업장 무단이탈임. 현장관리자의 약 70% 이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우선 순위로 3개씩 선택을 요청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임.
 - 다음으로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건설업 현장단위당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간소화 및 도입과정의 신속화’ 등을 선택함

나.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방안

☐ 건설업 고용허가제 관련 개선 방안

- 건설업 현장 간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노동력 수요가 연중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 고용을 위해서는 동일 사업주의 다른 현장으로 이동이 허용될 필요가 있음.
- 현장 간 이동시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그 외 현장 간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함
- 고용허가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건설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업 재입국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재입국 가능한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사현장은 많지 않음. 동일 사업주의 다른 현장을 포함하여 총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력 고용인원을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사업주 단위

로 배정할 경우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보다 유연한 인력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외국인력 고용허가는 현장단위로 하면서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은 사업주 단위로 적용하여 한 현장에서 불법고용 적발시 해당 사업주의 모든 현장이 외국인 신규고용이 제한되고 있음. 고용허가와 고용제한 처분의 단위가 동일하도록 변경할 것.

□ 건설업 동포인력 활용제도 개선방안

- 방문취업제(H-2)와 관련하여, 현실의 불법체류자의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방문취업 취업등록제 쿼터 설정은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이 가능한 방문취업제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방문취업제의 쿼터확대를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확대되는 기형적 구조를 갖는 건설업 외국인력 노동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 재외동포(F-4) 취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종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단순노무직 종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방문취업종사자가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 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재외동포 비자 발급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방문취업자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 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 외국인력 영향과 관리체계 개선

- 최근 들어 건설현장의 경우 중국한족 단기체류자의 유입증가현상이 건설업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음
-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현장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3.5%가 건설업에서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거나 또는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함
 - 현장관리자 중에는 불법취업 외국인은 내국인 일자리 및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우세함.
- 비숙련 인력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대체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국인의 숙련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및 숙련형성이라는 측면에

서 비숙련 외국인력 공급조절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

- 이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단기체류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
- 따라서 내국인력 활용도 제고 및 숙련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단기체류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입국통제,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확대와 불체자 단속강화를 병행하도록 하여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유도
- 불법취업자에 의해 잠식된 외국인력 수요를 합법인력 고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취업자에 대한 채용유인을 줄이고 불법고용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인력부족에 대한 적극 대처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중 60% 내외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내국인근로자 부족은 비숙련인력(54.5%)보다는 숙련인력(61.3%)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숙련인력 확보가 당면 과제로 대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8.8%에서 2017년 83.5%로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업 생산인력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
- 건설업으로의 내국인력 유입부족 문제는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공급 특성, 임금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된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높은 이직성향에 기인
 - 이러한 현상은 향후 청년층 노동공급의 감소와 맞물려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숙련단절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8~2022년 5년 기간 동안 건설기능인력은 95천명 초과수요(인력부족)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건설업 필요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산학연계, 보상체계 강화)과 숙련형성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구축 방지 등의 정책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건설업 인력부족 문제는 건설산업의 하청 구조,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바 최근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 적정수준의 공사비 산정, 하청단계 축소 및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

급체계의 개선과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같이 고려

□ 실태조사 결과 홍보, 교육, 관리감독 강화

- 공사규모가 작은 현장 및 지방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와 건설업 취업인증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취업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규모의 공사현장과 지방 공사현장 대상으로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